

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의안번호	제30호	제 출 자	논 산 시 장
제 출 일	2024. 03. 13.	회 부 일	2024. 03. 13.

1. 제안이유

- 공직자의 청렴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시민 및 공직자에게 홍보 물품 제공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- 청렴 관련 시책 홍보 활동 시 물품을 구입·활용하여 시민 및 공직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함 (안 제9조 제2항)

3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논산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활성화하는데 있어 공직자의 청렴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품 제공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
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